



경기도가
대한민국의 미래를 엮니다

-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민생안정을 위한 -
추석절 공직기강 특별감찰계획

감 사 관
[조사담당관]

-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민생안정을 위한 -

추석절 공직기강 특별감찰계획

◆ 추석절 장기연휴(9.18~22)로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추석 대비 민생안정대책 총체적 점검 등 **공직기강 특별감찰 계획** 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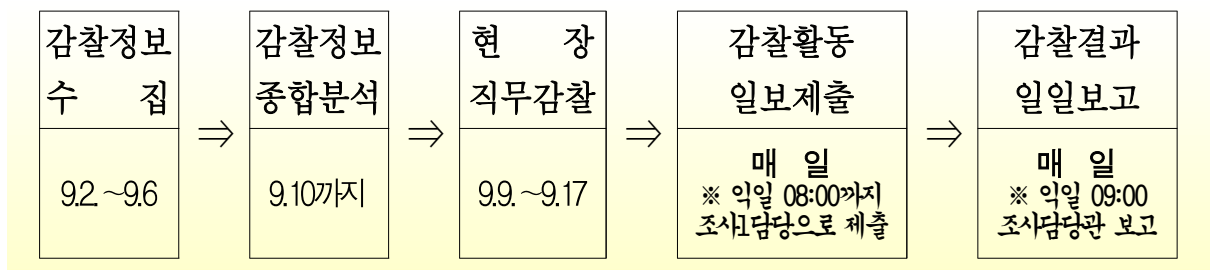
I 기본방침

- “국민이 행복한 사회” 구현을 위한 공직사회내 구조적 부정부패 발본색원
- 민생안정 저해, 공직기강 위해요인 등에 대한 고강도 감찰로 지역사회안정 및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확산

II 감찰계획

- **감찰기간** : 2013. 9.5. ~ 9.22(18일간)
- **감찰대상** : 道(공공기관 포함), 시·군 등
- **감찰반** : 5개반 28명(총괄 : 조사담당관)
 - 조사1팀장(8), 조사2팀장(5), 조사3팀장(6), 공직윤리팀장(5), 하도급개선팀장(4)
 - ※ 감찰반별 감찰대상 기관 : 별첨 1
- **감찰체계(방법)** : 비노출 감찰

— < 감찰흐름도(감찰반별) > —



○ 중점 감찰내용

① **민생안정 추진대책** ----- 조사1팀장(남부) / 조사3팀장(북부)

- 기관별 **추석절 연휴종합대책 운영실태**(근무인원, 비상연락망 가동 등)

- 의료기관(보건소, 병원, 약국) **당번근무제 운영실태**
- 매점매석, 담합거래 등 **불공정 거래행위 단속실태**
- **교통소통대책 및 쓰레기 수거대책**, 체불임금 해소대책
- 민원처리 지연, 불법건축물 등 **불법·무질서 묵인·방치** 등

② 청렴의의무· 품위유지의무,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

----- 조사1·2·3·공직윤리·하도급개선팀장

-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**금품·향응·선물 등 수수** 행위
- 직무관련자에게 **식사비 등 대납 요구** 행위
- **근무시간 중 음주** 등 기강해이 사례
- 유흥업소 출입, 접대골프, **법인카드 사적용도 사용**행위
- **선물구입 등 예산을 목적외 사용하는 행위**
- 근무시간 중 **허가없이 외부강의 출장**, **허위 초과근무** 등록
- 직무관련 **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** 등 재산상 이익, 이권개입
- 토착세력과 유착된 **특혜성 수의계약**, **인허가 위반행위**
- **관용차량 등 공용물 사적 사용**행위
- 기타 **공정한 직무수행 저해**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

III 조치계획

- **금품 등 관련 비리행위자 엄중문책 (사법기관 고발, 징계부가금 부과)**
- 비위발생 많은 특정 실국, 시군은 행정(기관경고)·재정적 패널티 부여 검토
- 국무총리실, 안행부, 검찰 등 외부기관 **적발 공무원 명단 상시 중점관리**

IV 행정사항

- 추석절 특별감찰에 차질이 없도록 당면업무 추진 일정 등 적의 조정(조사담당관)
- 일일 감찰활동 상황을 익일 08:00까지 반드시 제출(각반별 → 조사1팀장)

관행적 공직비리 유형

□ 산하기관·단체로부터 과도한 접대·향응 수수

- 산하기관 관계자들로부터 '업무보고' 등을 빙자하여 형식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유흥주점 등에서 과도한 향응을 수수하고 일부 성접대까지 받는 행위
- 업무협약·점검·교체 인사 등의 다양한 명목으로 수시로 산하기관(단체) 관계자들로부터 유흥주점 등에서 접대 받는 행위

□ 정도에 벗어난 '연찬회' 개최 및 향응수수 등

- 각종 착수보고회, 평가결과 보고회, 업무설명회 등의 명목으로 연찬회·세미나 등을 개최하면서 실제 필요한 업무량에 비해 과다(1박2일)하거나, 적절하지 않은 장소(관광지 등)에서 개최하면서 회계를 부적절하게 집행
- 산하단체, 관련업체 등과 연찬회를 개최하고, 연찬회 기간중 업체관계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거나, 연찬회(목금) 종료후 이어진 휴일에 추가 개인일정을 하면서 숙박비용 및 관광용 차량렌트비 등을 산하단체 등에 부담토록 하는 행위

□ 기관내 각종 친목모임·행사 등에 유관업체 스폰서

- 조직내 친목모임에서 사적인 등산·관광 등을 하면서 관련 업체관계자를 참석토록 하여 숙박비 및 식대 등을 지원받는 행위
- 등산 및 각종 행사시에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산하기관·단체 등을 참여시켜 주류비 등 뒤풀이 경비와 물품을 관례적으로 지원받는 행위

□ 상례를 벗어난 고가의 기념품 제작배포 및 수수

- 각종 행사 및 공사의 착공·준공 기념을 빙자해 상례를 벗어난 고가의 기념품을 다량으로 제작, 업무관련 기관 등에 배포
- 감독기관은 이를 시정·지도하지 않고 '기념품'이라는 이유로 관례적으로 다량을 수수하여 기관내에 배포하는 행위
 - * 필요시 소액·간단한 기념품으로 대체

□ 관련업체 및 부하직원으로부터 전별금 수수

- 이임을 전후하여 전별금 명목으로 부하직원 및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

□ 금요일 오후의 조기퇴근 등 근무기강 해이

- 지방소재 기관에서 금요일에 불필요하거나 허위 출장처리 또는 행정 조치 없이 수도권에 있는 자택 등으로 조기퇴근
- 금요일 관내·인근지역에 개최된 업무관련 행사에 참석후 행사종료 후에는 사무실로 귀청하지 않고 자택으로 조기퇴근하는 행위

□ 허위출장 처리후 출장비로 비자금(부서운영비) 조성

- 허위 출장처리를 하고 이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운영비를 조성하여 부서장 경비지원, 직원회식비, 전별금 등에 지출
- 관례적으로 근무지내 출장을 가지 않으면서도 허위출장을 청구해 일률적으로 서무가 공통경비화하여 회식비 등으로 사용

□ 인센티브 허위지급,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

- 기술료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허위지급하거나, 정상적인 액수보다 높게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(공금횡령)하는 행위

- 과제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함에 있어 사업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야 함에도, 과제진행에 참여치 않은 자에게도 지급하는 등 나눠먹기식으로 집행하거나 일부 과제책임자 단위별로 되돌려 받는 행위

□ 법인카드 변칙결제 또는 카드깡

-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, 식대를 실제금액보다 과다 결제한 후, 동업주의 친척이 별도로 운영하는 유흥주점(법인카드 사용불가업소)에서 실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계비리
- 자주 이용하는 식당 업주들과 짜고 실제 식사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식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카드결제 후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행위

□ 발주처 공사감리사업단의 시공사에 대한 부당요구 등

- 사업단의 공사감독(감리) 대상의 규모,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과다하게 시공사가 지원할 비품·인력을 '공사설계내역서'에 반영하여 방만하게 운영
- '공사설계내역서' 등에 명시된 비품·차량 등을 요구하면서 시공사의 지원규모를 초과하여 과다한 고가비품·차량을 요구하거나 지원대상을 벗어난 인력, 운동시설 등을 시공사에 요구
- 공사완료 후 현장 사업단에 비치된 고액의 비품에 대한 명확한 관리 기준(인수인계 방식, 인계기관 등)이 없어 고액의 비품 등이 개인적으로 처리되거나 사장되는 행위

□ 감사·평가관련 피감 및 피평가 기관으로부터 과도한 접대

- 산하기관을 감사 또는 각종 사업평가 등을 하면서 감사 및 평가기간 동안 대상기관으로부터 과다한 접대를 수수

□ 휴가 등의 과도한 민·관폐 행위

-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관 또는 업체로부터 숙박알선과 함께 향응·접대를 수수하는 행위

□ 산하기관, 유관업체 등으로부터 비공식적인 인력지원

- 인력부족, 업무과다 등을 이유로 산하단체, 유관업체 등으로부터 인력을 비공식적으로 지원받아 사실상 직원처럼 사무실에 상근 지원토록 하는 행위

□ 공무원의 무료초대권 강요 및 수수행위

- 공무원들이 국공립 예술기관 관계자들로부터 무료초대권을 수수 및 인기 유료공연·스포츠 경기 티켓 등의 확보를 청탁하는 행위

□ 유관기관·단체 등에 경조사를 통보하는 행위

- 산하 유관기관·단체 홈페이지에 감독기관 공무원의 경조사를 관행적으로 게시하거나 업무관련 기업 등에 통보하여 사실상 축의금·조의금을 강요하는 행위

□ 업무관련 기관·단체에 대한 고액의 강의료 수수

- 업무관련 기관·단체를 대상으로 사례성 강의를 하면서 사회통념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강의료를 수수하는 행위

□ 업무관련 민원인에게 전문직 알선

-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는 전문직 종사자(설계·변호·세무·법무·관세사 등)를 업무관련 민원인에게 소개함으로써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

□ 해외출장시 과도한 장도금 지급 행위

- 공무원이 공·사적인 이유로 해외출장(여행)시 부서 또는 개인적으로 과도한 장도금을 수수하는 관행

□ 업무용 택시제(나비콜)의 부적절한 운영

- 출·퇴근시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거나, 대중교통이 편리한 장거리 출장의 경우에도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는 행위